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0일, 조승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2. 25.)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승환의원)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현재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미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만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함께 「형법」과의 정합성 문제,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